KOSHA GUIDE

C - 5 - 2016

(2)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한다.)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건설공사 주체별 의무

4.1 발주자의 의무

- (1)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 시 돌관작업을 하지 않고도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.
- (2) 돌관작업을 추진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사품질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공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로 산정하여 공사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.

4.2 감독자 및 감리자의 의무

- (1) 건설업체로부터 돌관작업 계획서를 제출 받아 작업계획에 따라 시공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.
- (2) 일일 작업계획이 품질 및 안전·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하게 수립·이행되는지 확인한다.
- (3) 돌관작업으로 안전보건 조치가 불량하여 중대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고, 해당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.

4.3 건설업체의 의무

- (1) 돌관공사 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(가) 근로자투입 및 근무시간의 적정 배분 계획
 - (나) 미숙련 근로자에 대한 안전·보건교육실시 계획
 - (다) 근로자 휴게시설 확보 계획